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3. 제 안 이 유

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불합리한 규제관련 조문의 삭제와 일부 조문의 정비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.

4. 주 요 골 자

가. 수입증지 판매인 판매소 폐지신고 의무화 삭제(안 제11조2항)

나. 판매소의 위치중 민원실내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
직장근거리에서 위탁판매를

⇒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위탁판매(안 제12조)

다.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사항 삭제(안 제15조)

- 판매인의 장소 변경하였을 때와 사망하였을 때
-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아니하였거나 주소불명한 때
- 판매인이 무능력자인 때

라. 판매인 보유 수입증지중 오염, 훼손에 따른 증지교환시 그
원인이 판매인의 고의·과실의 경우 교환 불가 조문 삭제
(안 제26조)

5. 검토 의견

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- 이는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일부조문의 정비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
- 제15조의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와 제26조의 증지 교환에 관한 조문을 폐지시 증지관리의 방법과
- 제12조의 판매소의 위치 중 단서조항의 “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, 직장금고는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, 그 판매를 위탁판매 할 수 있다”라는 개정조문과 동 조례 제7조 3항의 소속 직원중에서 판매 적임자를 지정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의 차이점에 대한
-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※ 붙임 :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